▌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20. 9. pp.187-215 https://doi.org/10.35525/nabo.2020.9.3.00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혜정**

국문초록

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 주제어: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투고일: 2020. 8. 10. 수정일: 2020. 8. 25. 게재확정일: 2020. 9. 1.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2020. 7. 16.)의 발표자료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 (hjsim@nabo.go.kr)

Ⅰ. 문제의 제기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OECD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 기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고용유형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영업, 임시직, 긱 노동자(gig worker)[1]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OECD 전체적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16%,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2019)에 따르면 긱 노동자는 국가별 편차가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정되며, 맥킨지는 2025년 긱 노동자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18.5%, 영국은 16.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비롯, 노동시장 규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는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Milanez et al. 2019).

우리나라도 근로자와 자영자에 대해 차등화된 소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체계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 및 가입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경우(사업주가 없는 자영업자, 사업주와의 종속관계가 약한 독립계약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차이는 고용계약 당사자인 고용주와 노동자 각각에게 조세전략(tax arbitrage)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보다 비임금 노동비용(예: 퇴직금 및 각종 보험료, 교육훈련비용 등)이 낮은 자영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고용형태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높다.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숙련 노동자 등은 과세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 회피 등의 유인이 존재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1) 긱(gig · 임시로 하는 일) 노동자는 배달대행앱 · 대리운전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자가 그때그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유형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 간 과세 중립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조세체계를 점검하기로 한다.

Ⅱ. 기존 연구

Milanez et al.(2019)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의 8개국을 대상으로 조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가 고용형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자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현행 조세 및 사회보장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유인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고용형태별 세부담 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근로자와 자영자간 비교를 통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다. 김낙회·윤태화(2010)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고, 추정한 소득탈루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자의 추정소득을 산출한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반면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밖에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 연구로 배준호·홍충기(1998)와 전병목·안종석(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두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업소득세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낮다.

한편 자영자에 대한 소득탈루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소득세 공제·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연구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성명재(2019)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탈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체계의 범위와 수준이 근로자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자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성명재(2019)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하는 한편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공제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고용형태별로 부담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연구가 납세자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본고의 목적은 근로계약의 두 당사자인 근

로자 개인과 기업 각각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계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어떠한 고용형태가 유리한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금과 함께 기업의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사회보험료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세부담 수준을 고용형태별로 비교하기로 한다. 또 세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출까지 분석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별로 개인 또는 기업의 순(net)부담액을 추정하고, 이들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고용형태를 취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개인 또는 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한지 비교한다.

Ⅲ. 분석 자료

본고는 소득세 실효세율 산정을 위해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자료를 활용하였다.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고의 분석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규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소득세 공제대상 지출액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 표는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총급여 규모별 인적공제 및 지출관련 공제액 규모를 나타낸다. 총급여 47,500천원인 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는 5,270천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2,758천원,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액은 270천원이다.

[표 1] 총급여 규모별 공제액

(단위: 천원)

총급여액	47,500	55,000	70,000	90,000	150,000	400,000	750,000	1,000,000
인적공제	5,270	5,784	6,572	6,915	7,327	6,332	6,026	5,501
- 기본공제	3,418	3,829	4,424	4,649	4,989	4,249	4,063	3,687
- 추가공제	1,852	1,955	2,148	2,266	2,338	2,082	1,963	1,813
신용카드소득공제	2,758	2,851	2,830	2,705	2,576	2,303	2,281	2,357
자녀세액공제	278	288	287	277	269	268	269	296
특별세액공제	270	588	759	863	986	1,213	1,457	1,696
- 보험료	113	114	116	116	117	115	115	115
- 의료비	320	393	492	559	623	1,113	1,871	3,974
- 교육비	302	332	415	532	617	801	842	908
- 기부금	128	147	191	249	339	1,111	2,116	7,9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본고의 분석에서 공적 이전소득에는 EITC(근로장려세제) · CTC(자녀장려세제) 및 기초생활보장비를 반영하였다. 소득규모별 EITC(근로장려세제) · CTC(자녀장려세제) 규모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아래 표는 총급여 규모별 EITC 및 CTC의 가구당 수급액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EITC 및 CTC의 가구당 수급액 규모는 각각 1,071천원, 833천원이다. 또 사업자는 각각 1,165천원, 880천원이다.

[표 2] EITC · CTC 가구당 수급액

(단위: 천원)

급여	근로자 가구당 지급액		사업자 가구당 지급액	
	EITC	CTC	EITC	CTC
500	181	975	155	991
1,500	536	971	531	993
2,500	875	910	875	976
3,500	1,211	964	1,215	982
4,500	1,427	979	1,415	975
5,500	1,513	987	1,513	971
7,000	1,621	988	1,655	976
8,500	1,653	988	1,691	976
9,500	1,627	980	1,678	990
11,000	1,509	977	1,577	976
12,500	1,403	979	1,481	966
14,000	1,271	965	1,380	973
16,000	1,042	955	1,191	969
18,500	754	954	967	964
20,500	1,484	925	1,579	967
23,000	1,188	885	1,296	931
27,500	635	780	771	852
32,500	642	671	631	748
37,500	231	568	230	646
평 균	1,071	833	1,165	88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기초생활보장비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활용하였다. 2018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165천 가구이며, 가구당 3,852천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가구가 32.1%로 가장 많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29.8%, 0원 초과~20만원 이하 가구가 13.0% 순이다[표 4].

[표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분	지급액 (백만원)	총 수급자 (가구, 명)		가구당지급액 (천원)	인원당지급액 (천원)
	(A)	가 구(B)	인 원(C)	(A/B)	(A/C)
2010	3,997,766	878,799	1,549,820	4,549	2,580
2015	3,409,522	1,014,177	1,646,363	3,362	2,071
2016	4,156,506	1,035,435	1,630,614	4,014	2,549
2017	4,437,654	1,032,996	1,581,646	4,296	2,806
2018	4,488,771	1,165,175	1,743,690	3,852	2,574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표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가구, %)

소득구간	가구수	가구수 비중
소득 없음	346,941	29.8
0~20만원 이하	151,346	13.0
20만원~40만원 이하	374,133	32.1
40만원~60만원 이하	100,941	8.7
60만원~80만원 이하	65,940	5.7
80만원~100만원 이하	37,797	3.2
100만원~120만원 이하	25,427	2.2
120만원 초과	62,650	5.4
계	1,165,175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Ⅳ. 실증분석

1. 고용형태별 과세체계

현행의 소득세제 및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차등적으로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례분석에서 고용유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Case 1)와 자영자(Case 2)로 구분한다. 또한 디지털 기업,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인력 유치시 지분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주(Case 3) 형태를 추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Case 1: 근로자
Case 2: 자영자
Case 3: 공동 사업주(the owner-manager of a corporation)

아래 표는 위에서 구분한 세 가지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받는 과세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전통적인 근로자(Case 1)의 경우, 기업의 총고용비용은 임금과 사회보험료(피고용인과 절반씩 부담)로 구성된다. 피고용인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고용주와 절반씩 부담)를 부담한다. 노동형태가 자영자의 경우(Case 2) 기업의 고용비용은 근로종사자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며,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용인인 개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주(Case 3)인 경우 기업은 근로대가로 임금과 배당[2]을 지급하게 되고, 근로종사자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와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

2) 현행 소득세 체계 중 근로의 대가 중 일부를 자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스톡옵션 소득에 대해서는 옵션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대가의 일부를 자본소득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주식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옵션 행사(또는 취득)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표 5]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로유형별 차이

		case 1 근로자	case 2 자영자	case 3 공동사업주
기업	비용	• 임금	• 임금	• 임금 및 자본소득
		• 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제	• 지불 임금 · 사회보험료 손금 인정	• 지불 임금에 대한 손금 인정	• 지불 임금에 대한 손금 인정
개인	부담	• 근로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배당 등 자본소득)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임의가입) - 산재보험(임의가입)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임의가입) - 산재보험(임의가입)
	이전소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자료: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계를 기준으로 저자가 작성함.

[표 6] 가입자 유형별 4대 연금 · 보험 보험료율(2020년 4월 기준)

(단위: %)

	사업주	근로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4.5	4.5	9.0
고용보험	1.05~1.65[1)]	0.8	2.25
산재보험	0.73~18.63[2)]	-	-
건강보험	3.3335	3.3335	점수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주: 1)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2) 업종별 차등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자간에 소득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영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의 규모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소득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3] 이에 반해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가능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소득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즉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제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 각종 특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표 7].

자영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2020년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구성하는 소득 유형(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표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소득세 공제 차이

공제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본공제	○	○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	○
주택자금공제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배당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	×[1)]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	×[1)]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

주: 1) 다만 성실신고사업자는 가능함.

3) 사업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명재(2008)는 2003~2006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0~36.4%로 추정하였으며, 안종석 외(2010)는 2008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23%로 추정하였다.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 방법은 외형(매출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방식과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추정 모형

이상에서 설명한 부과체계의 차이에 근거하여 고용형태별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국민부담 격차(PW)란 조세격차(tax wedge)를 확장한 개념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부담하는 총고용비용(TEC)과 노동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세후순소득(IW) 간의 차이를 총고용비용(TEC)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식(1)). 여기서 총고용비용과 세후순소득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이전소득의 존재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국민부담 격차는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액에서 민간에 지급된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순 징수금액을 의미한다. 같은 이유로 국민부담 격차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에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실제 국민부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개념을 식(2)과 식(3)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총고용비용(TEC)은 근로자에 대한 지불임금(TW)과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employerSSCs$)로 구성된다(식(2)). 또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TW)에서 소득세(TAX)와 사회보험료($employeeSSCs$)를 부담(차감)하고, 정부 이전소득(TS)을 합한 금액을 최종적인 개인 세후순소득(IW)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를 식(3)으로 나타내면 개인에게 지불된 총임금(TW)은 세후순소득(IW)에 소득세(TAX),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employeeSSCs$)를 더한 값에 이전소득(TS)을 차감한 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의할 때 국민부담 격차(PW)는 아래 식(5)와 같이 최종 산출된다.

$$PW = \frac{TEC - IW}{TEC}, \qquad \text{식 (1)}$$

$$TEC = TW + employerSSCs, \qquad \text{식 (2)}$$

여기서, $TW = IW + TAX + employeeSSCs - TS,$ 식 (3)

따라서, $TEC = IW + TAX + employeeSSCs + employerSSCs - TS,$ 식 (4)

결국, $PW = \frac{TAX + employeeSSCs + employerSSCs}{TEC} - \frac{TS}{TEC},$ 식 (5)

위 식(1)~식(5)에서 PW는 국민부담 격차를, TEC는 기업의 총 고용비용을, TW는 지불임금을, IW는 개인의 세후순소득을, TAX는 소득세를, $employeeSSCs$는 피고용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employerSSCs$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TS는 공적 이전소득을 의미한다.

3. 기본 가정 및 세부 추정방법

본고의 분석에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의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를 취하고 있지만 가구원수 등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공제상 차이가 있다. 다만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형태인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과세 상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본 분석의 목적인 고용형태별 과세상의 차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4,749,174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 실효세율 산정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규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소득세 공제대상 지출액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구간별 근로자 평균 지출액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를 각각의 근로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금액 규모와 연동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등 공제는 소득세 계산기(tax calculator)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하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제도별 산식을 활용하여 소득규모별로 저자가 직접 계산하여 고용형태별로 반영하였다.

공적 이전소득에는 EITC(근로장려세제) · CTC(자녀장려세제) 및 기초생활보장비를 반영하였다. EITC(근로장려세제) · CTC(자녀장려세제) 규모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수급액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각각의 고용형태에 적용하였다. 기초생활보장비는 보건복지부의 소득규모별 평균 지급액 규모를 각각의 근로유형에 적용하였다.

한편 본 분석의 목적은 고용형태별 부과체계의 차이로 고용주인 기업과 노동자인 근로자[4] 각각에게 조세전략(tax arbitrage)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민부담 격차는 기업측면과 개인 근로자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하였

4) 본고의 분석은 고용형태별로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다. 기업측면에서의 목적 함수는 고용형태에 따른 총 고용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개인 세후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하게 총 고용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용계약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개인측면에서의 목적함수는 세후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업의 총 고용비용에서 개인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크기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측면의 목적 함수인 세후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신고방식과 납세순응도 차이와 관련 있다. 먼저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고용주의 원천징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근로소득에 비해 넓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과세당국에 대부분 노출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낮으며, 실비 변상적인 경비 이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사업소득에 비해 좁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신고행태 차이를 반영한 개인 세후소득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즉 자영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근로소득자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자영자에게 일정비율의 필요경비율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또 본고의 필요경비율은 소득탈루율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4.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가정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필요경비율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의 평균은 82.0%이며, 신고자 유형별, 소득규모별, 업종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5)]

한편 본고의 목적은 동일한 노동생산성을 가진 개인이 근로유형을 근로자(the dependent employee) 또는 자영자로 달리 적용함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5) 예를 들어 업종별로는 농·임·어업 제조업 등은 필요경비율이 90%를 상회하며,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종은 60~7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신고유형별로는 장부신고의무가 있는 외부조정·자기조정·성실신고·간편장부 신고자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장부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단순 경비율의 경우 60~70% 수준이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필요경비율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고용형태만 자영업자인 인적용역서비스 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인적용역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한 소득금액 산정방식은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6)과 같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식 (6)
식(6)에서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필요경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식(7)). 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산식방법과 단순경비율 산식방법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식 (7)

아래 표는 국세청 고시 2019년 귀속 경비율에서 인적용역 서비스업인 업종(코드 940)의 필요경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은 15~26% 수준에서 설정되어

업종	필요경비율	신고유형	필요경비율	소득규모	필요경비율
농 · 임 · 어업	94			1천만 이하	86
도 · 소매업	94	외부조정	86	2천만 이하	86
전기 · 가스 · 수도업	92	자기조정	84	4천만 이하	88
음식 · 숙박업	91	성실신고	88	6천만 이하	89
하수 · 폐기물처리	91	간편장부	81	8천만 이하	89
제조업	90	기준경비율	75	1억 이하	89
건설업	90	단순경비율	61	2억 이하	87
운수 · 창고 · 통신업	88	비사업자	22	3억 이하	83
광업	87			5억 이하	80
교육서비스업	86			5억초과	77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84				
임대및사업서비스업	84				
금융 및 보험업	76				
기타	74				
보건(의료업)	73				
부동산업	60				

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필요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의 비중임.
자료: 2019「국세통계연보」

있으며, 2018년 평균은 18.8%이다. 또 단순경비율은 50~60% 내외 수준이다.

결국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방식과 국세청 고시 필요경비율 현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입비용, 인건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것은 공제대상 경비로 우선 인정받고, 기타 비용은 수입금액의 20% 내외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경비로 공제된다. 한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증빙자료 없이 대체적으로 수입금액의 50~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표 8]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화가 및 관련예술가	72.3	61.2	18.7
작곡가	58.5	41.9	20.7
배우 등	34.0	7.6	9.7
모델	50.8	31.1	6.9
가수	37.3	12.2	12.2
성악가 등	53.1	34.3	20.7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9.2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23.7
자문, 감독, 지도료,고 문료	58.4	41.8	21.1
바둑기사	66.0	52.4	7.3
꽃꽂이 및 요리교사	79.8	71.7	16.7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19.4
직업운동가	58.6	42.0	16.6
유흥접객원 및 댄서	61.7	46.4	16.5
보험설계사	77.6	68.6	26.6
음료품배달원	80.0	72.0	22.4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75.0	65.0	25.7
컴퓨터프로그래머	64.1	49.7	19.2
다단계판매원의후원 수당	67.8	54.9	19.9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 수당	67.3	54.2	22.6
개인간병인	80.2	72.3	16.3
대리운전기사	73.7	63.2	17.1
골프장캐디	67.3	54.2	15.8
목욕관리사	69.8	57.7	16.7
행사도우미	68.1	55.3	22.4
심부름용역원	69.2	56.9	23.9
퀵서비스배달원	78.8	70.3	25.3
이삿짐운반원	68.0	55.2	22.6
기타 가사서비스	84.3		16.3
가사보조원	79.7		19.2
보육시설(비인가)	85.1		21.2
평 균	67.2	51.7	18.8

자료: 국세청,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20.3.

이러한 인적용역사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현황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자영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0%, 20%, 50%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한다. 필요경비율 0%는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하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제도상 차이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안의 의미로서 설정하였다. 20%는 기준수입금액 이상 인적용역사업자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필요경비율 수준, 50%는 소득탈루율을 감안한 경비율 수준이다.

5. 분석 결과

가. 기업 측면: 개인 세후순소득(IW)을 동일하다고 가정 시

먼저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총고용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인에게 동일한 세후소득(IW)을 보장한다고 가정하고 고용형태별로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개인의 세후소득이 고용형태별로 동일하다고 가정 시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총고용비용과 그 요소들을 분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에게 세후소득 4천5백7십만원 수준을 보장해야한다고 할 때, 근로자로 계약할 경우 총고용비용은 56,990천원이다. 한편 개인의 고용형태를 자영자(필요경비 0% 가정 시)로 계약할 경우 총고용비용은 61,833천원이다. 따라서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이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영자보다는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0%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근로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은 기업으로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세무상 인정하는 부분 또는 그 이상(소득탈루율 감안 시)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근로형태를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와 자영자로 계약한 경우 두 경우의 기업의 총노동비용을 동일하게 만드는 필요경비 인정율은 20%로 추정되었다.[6] 따라서 근로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하는 경우 자영자인 개인이 필요경비율을 20%보다 높게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보다 총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6)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20%일 때 총 고용비용은 56,933천원으로 근로자의 56,990천원과 거의 유사하다.

들어 고용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의 필요경비 인정율이 50%인 경우 개인의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4천5백7십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총고용비용은 50,869천원으로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의 56,990천원보다 10.7% 낮다.

[그림 1] 총고용비용의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기업측면: Case 1 vs. Case 2)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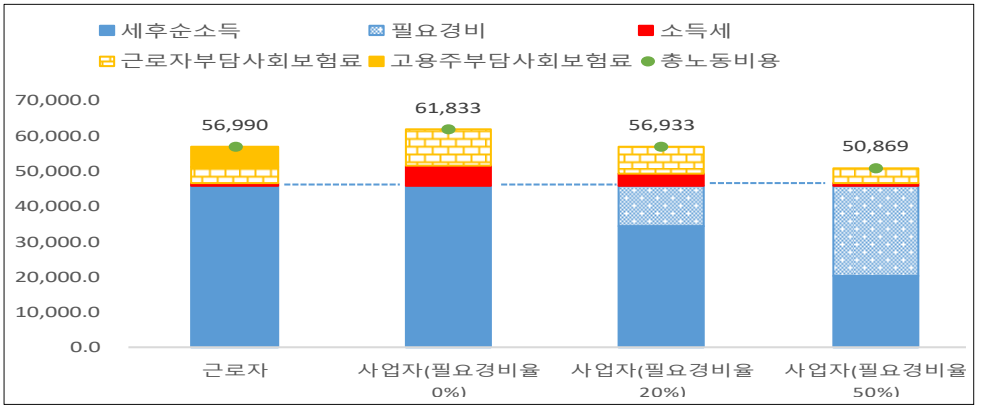

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표 9] 총고용비용의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기업측면: Case 1 vs. Case 2)

(단위; 천원, %)

	근로자	자영자		
		필요경비율 0%	필요경비율 20%	필요경비율 50%
총고용비용 계(금액)	56,990.1	61,832.8	56,933.3	50,869.1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5,748.4	45,760.1	45,760.8
- 세후순소득	45,760.0	45,748.4	34,373.4	20,326.2
- 필요경비	0.0	0.0	11,386.7	25,434.6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6,084.4	11,173.2	5,108.4
소득세	937.0	5,972.4	3,724.7	948.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10,111.9	7,448.6	4,159.5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총고용비용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74.0	80.4	90.0
- 세후순소득	80.3	74.0	60.4	40.0
- 필요경비	0.0	0.0	20.0	5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26.0	19.6	10.0
소득세	1.6	9.7	6.5	1.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6.4	13.1	8.2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나. 근로자 측면: 기업의 총고용비용(*TEC*)을 동일하다고 가정 시

(1) 근로자(Case 1)와 자영자(Case 2)간 비교

다음으로 개인의 측면에서 세후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업이 동일한 금액의 고용비용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고용형태별 국민부담 격차(조세 및 사회보험료), 세후소득을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의 대가로 연간 56,990천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근로자는 총 대가의 80.3%인 45,760천원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자영자(필요경비 0% 가정 시)는 총 대가의 74.3% 인 42,366천원을 세후소득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자영자로 계약 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개인의 세후소득을 높이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영자의 필요경비 인정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한 총 고용비용에서 개인의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근로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이 필요경비율을 20%[7] 이상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보다 자영자로 계약하는 것이 조세격차를 줄임으로써 세후소득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영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총 고용비용의 89.4%인 50,959천원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림 2]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근로자 측면: Case1 vs. Case2)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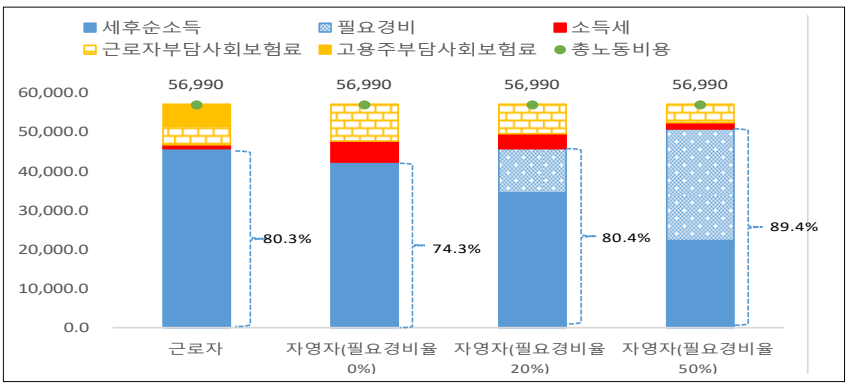

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7)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20%일 때 총고용비용에서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80.4%로, 근로자의 80.3%와 거의 유사하다.

[표 10]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근로자 측면: Case1 vs. Case2)

(단위: 천원, %)

	근로자	자영자		
		필요경비율 0%	필요경비율 20%	필요경비율 50%
총고용비용 계(금액)	56,990.1	56,990.1	56,990.1	56,990.1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2,366.1	45,803.2	50,958.8
- 세후순소득	45,760.0	42,366.1	34,405.2	22,463.8
- 필요경비	0.0	0.0	11,398.0	28,495.0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4,624.0	11,186.9	6,031.3
소득세	937.0	5,304.0	3,730.9	1,371.3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9,320.0	7,456.0	4,660.0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총고용비용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74.3	80.4	89.4
- 세후순소득	80.3	74.3	60.4	39.4
- 필요경비	0.0	0.0	20.0	5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25.7	19.6	10.6
소득세	1.6	9.3	6.5	2.4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6.4	13.1	8.2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2) 자영자(Case 2)와 공동사업주(Case 3) 간의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2020년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구성하는 소득 유형(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총수입 금액의 일정비율(25% 및 50%)을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종사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총 노동대가에서 세후 소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종사자가 대가로 지급받는 총수입 금액이 56,990천원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높다. 이는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액이 0.1~0.2%p 낮은 데 기인한다. 근로의 대가 중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은 총수입

금액 56,990천원인 개인은 소득세 한계세율 15%를 적용받게 되는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15%)보다 낮은 원천징수 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을지 또는 배당소득으로 받을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지는데, 한계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배당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제상 유리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총소득계층별 차이 비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표 11] 총고용비용의 분해: 대가의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경우(근로자 측면: Case2 vs. Case3)

(단위: 천원, %)

	근로자	자영자(필요경비율 20%)		
		L:C[1)]=100:0	L:C[1)]=75:25	L:C[1)]=50:50
계(금액)	56,990.1	56,990.1	56,990.1	56,990.1
세후순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5,803.2	45,959.9	46,023.2
- 세후순소득	45,760.0	34,405.2	34,561.9	34,625.2
- 필요경비	0.0	11,398.0	11,398.0	11,398.0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1,186.9	11,030.2	10,966.9
소득세	937.0	3,730.9	3,574.2	3,510.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7,456.0	7,456.0	7,456.0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조세격차	19.7	19.6	19.4	19.2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순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80.4	80.6	80.8
- 세후순소득	80.3	60.4	60.6	60.8
- 필요경비	0.0	20.0	20.0	2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19.6	19.4	19.2
소득세	1.6	6.5	6.3	6.2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3.1	13.1	13.1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주: 1) L:C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 중 임금(L):배당소득(C)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3]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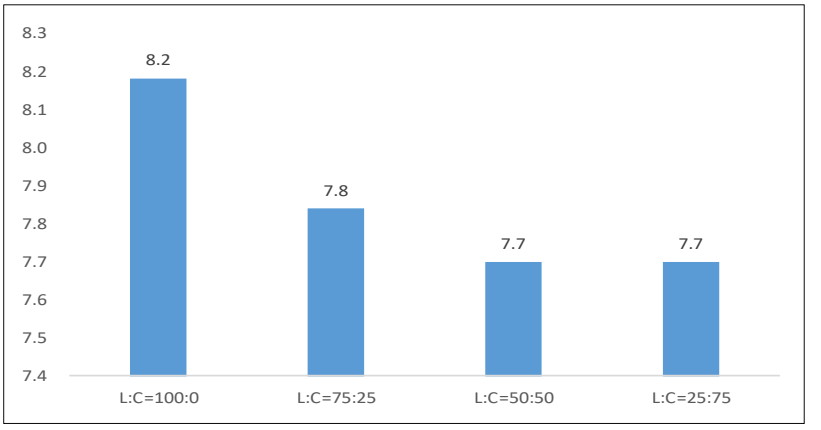

주: 1)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 금액이 56,990천원일 경우를 가정하였다.
2) L:C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 중 임금(L):배당소득(C)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 총소득계층별 차이 비교

(1) 근로자(Case 1)와 자영자(Case 2) 간의 비교

앞 절의 분석은 개인의 세후소득을 2020년 중위소득인 연 4천5백7십만원 수준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 격차는 총소득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체계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설정되어 있고, 저소득 구간에는 소득보전을 위한 이전지출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부담 격차는 저소득 구간에서 고소득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하에서는 고용유형별로 소득구간별 국민부담의 격차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유형별 국민부담 격차는 총수입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필요경비율이 0%인 자영자를 비교하면 전체 총급여 구간에서 자영자의 국민부담 격차(PW) 수준이 높은데, 총급여 35,000천원 이상에서 47,500천원 구간에서 둘 간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둘 간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총급여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진다[그림 4]. 한편 근로자와 필요경비율이 20%인 자영자를 비교하면, 총급여 55,000천원 이상부터 근로자의 국민부담 격차(PW)가 자영자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하여 총급여 80,000천원 이상부터 근로자의 국민부담 격차가 자영자를 추월한다. 이후 총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둘 간의 격차가 커진다[그림 5].

[그림 4] 총수입계층별 근로자와 자영자(필요경비율 0%)간 국민부담 격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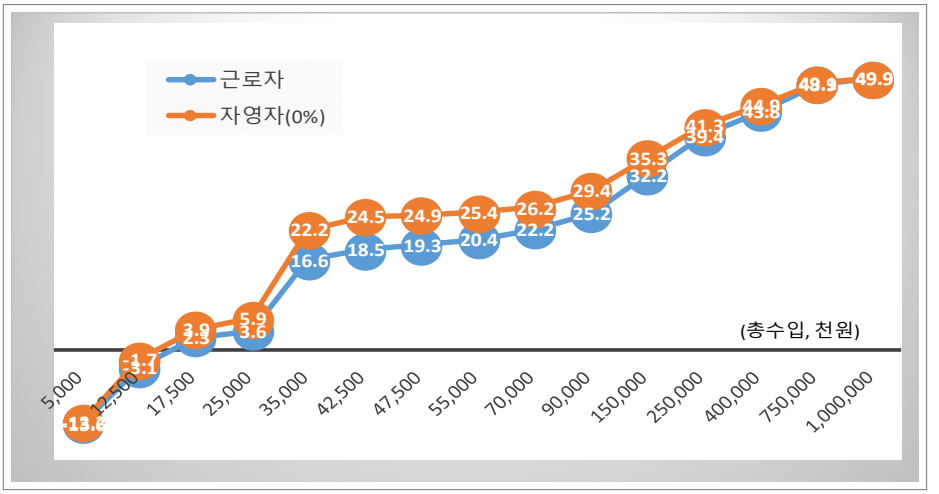

[그림 5] 총수입계층별 근로자와 자영자(필요경비율 20%)간 국민부담 격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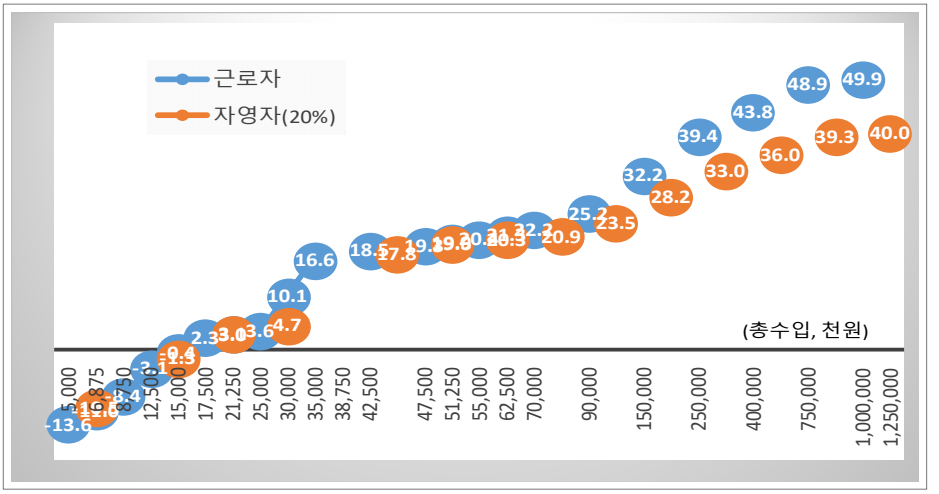

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총수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국민부담 격차가 자영자를 추월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국민부담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에 주로 기인

한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와 필요경비가 '0'%인 자영자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제도적 차이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만을 비교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소득 금액 4억원 이상부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자영자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와 함께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비롯, 각종 공제제도에 다소 강한 수준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급여가 올라가도 비례적으로 공제규모가 커지지 않고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게 된다. 특히 80,000천원 이상 구간부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 국민부담의 격차도 80,000천원 이상 구간에서 커지게 된다.

[그림 6] 총소득계층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Case 1 vs. Case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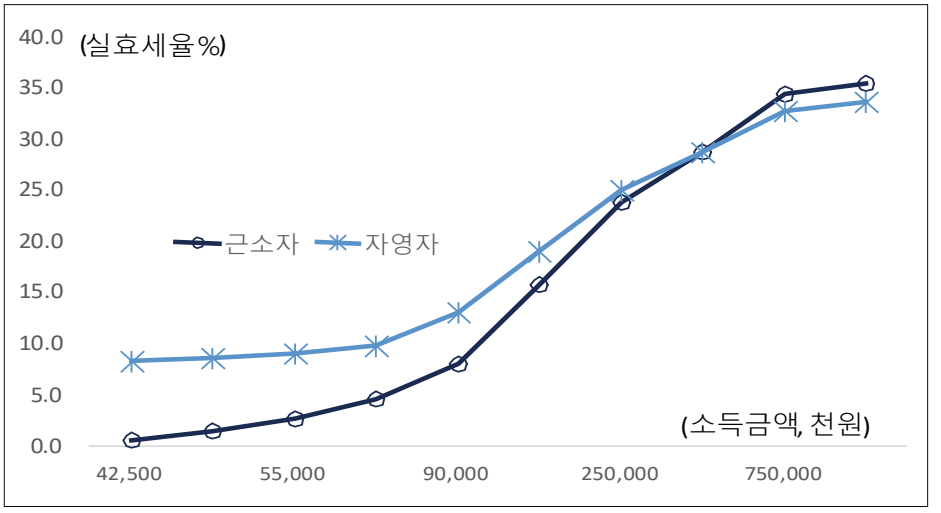

주: 막대 그래프의 양(+)의 값은 대가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받았을 경우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보다 높음을, 음(-)의 값은 더 낮음을 의미

(2) 자영자(Case 2)와 공동사업주(Case 3) 간의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소득유형별로 과세상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유형의 선택에 따라 부담하는 소

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또 실효세율의 크기는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총수입 규모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수입 규모 50,000천원 수준을 기점으로 하여 50,000천원 초과 시에는 배당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소득세율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표 4천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7] 총수입계층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Case 2 vs. Case 3)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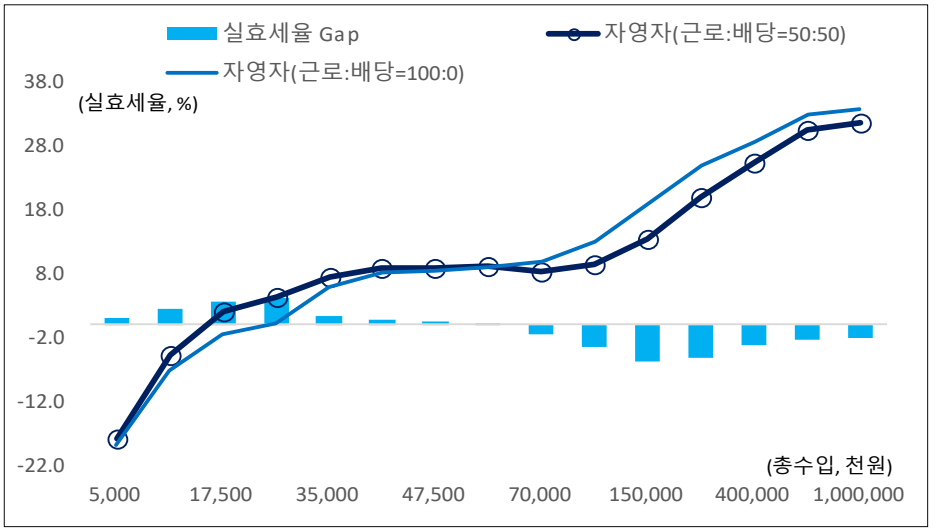

주: 막대 그래프의 양(+)의 값은 대가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받았을 경우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보다 높음을, 음(-)의 값은 더 낮음을 의미

V. 결 론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근로유형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근본 원인은 근로유형별 또는 소득유형별로 차등화된 소득세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소득자와 자영자를 비교하면, 자영자는 사업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보다 보다 넓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재량의 여지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넓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필요경비를 20% 이상 인정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자로 근로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고용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에서 세후소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급여수준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자의 과세상의 이득은 더 커지는 데, 특히 총급여 80,000천원 이상 구간에서 급격히 커진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총급여 80,000천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되어 해당 구간 이후부터 실효세율이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기인한다.

자영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을지 또는 배당소득으로 받을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이는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의 크기가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보다 큰 고소득 자영자의 경우 대가의 일부를 배당소득 등 자본이득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적어도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유인하는 체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고는 고용형태 간 수평적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율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현행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서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인적용역서비스의 업종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오히려 유사한 근로용역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이 경우 적어도 고소득 구간에서는 현행 인적용역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이 근로자에 비해서 유리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본이득에 대한 과

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로 본고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로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의 형태가 과세상 유리함을 보였다.

한편 근로형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skill)을 보유한 고숙련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기업과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형태의 가변성은 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의미가 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비정형 기그 워커'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유연성보다는 고용안정성이 더 선호되는 가치일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이 낮은 저숙련 비정형 근로자에 대해서는 협상의 우선권을 가진 기업(또는 고용주)에게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각 연도.

김낙회 · 윤태화,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부담 추정 및 공평성 분석,”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3호, 2010, 373~399쪽.

박강우 · 홍승제,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2009.

배준호 · 홍충기,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분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1998, 51~76쪽.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9.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2008, 155~188쪽.

_____,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2019, 9~48쪽.

안종석,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전병목 · 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한국은행,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9.

EU, “Fair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facts sheet),” 201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 접속: 2020. 4.>

Freeman, R.,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Age-Earnings Profil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4, 1979, pp.289-318.

Murphy, Kevin and Finis Welch, “The Structure of Wag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7, 1992, pp.285-326.

Milanez, Anna and Barbara Bratta, “Annex - Taxation and the Future of Work: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42, OECD publishing, 2019.

OECD,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OECD publishing, 2019.

Ryder, Norman B.,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0, 1965, pp.843-861.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Sim, Hyejeong*

Abstrac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increasing diversity in employment contracts, this paper intends to look into whether the current tax system will affect the choice of employment forms in the future. To shed light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how the tax burden according to the current income tax (including social security program)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 of workers or the choice between income types. As a result,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Korea is advantageous to select business income rather than earned income and capital gain rather than earned income in the high income segment.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tax and social security system can give rise to incentives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employment type to a new form of employment.

□ Keywords: Personal Income Tax,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Employment Form

* Director of Tax Policy Analysis Division 1 i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